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해양수산과학원, 도립도서관, 농업박물관 －

2023. 7.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3. 4. 28.부터 5. 9.
 - 해양수산과학원 : '23. 4. 28.부터 5. 9.까지
 - 도립도서관·농업박물관 : '23. 4. 28.부터 5. 4.까지
- 감사인원 및 기간
 - 해양수산과학원 : 5명, 7일간
 - 도립도서관·농업박물관 : 각 3명 5일간
- 감사범위
 - 해양수산과학원 : '20. 5월부터 '23. 4월까지
 - 도립도서관·농업박물관 : '20. 2월부터 '23. 4월까지

II. 감사결과

- 총 31건의 위법·부당사항, 모범사례를 확인

(단위 : 건/ 백만원)

대상 기관	총계 (가:다)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 사례 (다)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F)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권고 (E)		기관 경고 (F)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합계	31	1 (1)		1 (1)	27	8 (9.5)	3 (9.5)	3 (9.5)				5	16		3		3
해양수산 과학원	17	1 (1)		1 (1)	15	5 (9.2)	2 (9.2)	2 (9.2)				3	9		1		1
도립 도서관	8				7	2 (0.3)	1 (0.3)	1 (0.3)				1	4		1		1
농업 박물관	6				5	1						1	3		1		1

Ⅲ. 주요 처분요구

1 해양수산과학원 10건

① 공수산질병관리사 선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위 과학원(운영지원과 등)은 '20년부터 '23년 4월까지 도내 양식장 질병 관리를 위해 공수산질병관리사 68명을 선정하여 월 85만원을 지급하고, 수산업경영인선정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업인 후계자 등을 선정

1. 공수산질병관리사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6 등에 시장·군수는 수산질병 관리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고필증 뒤쪽에 처분요지·정지기간을 적도록 규정
- 한편 과학원은 '20년부터 '23. 4월까지 수산질병관리사* 모집 공고에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22년부터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며, 경험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 (자격)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등

- 그런데 과학원(운영지원과)은 '20년부터 '23. 4월까지 수산질병관리사 68명 중 55명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을 미확인한 채 선정
- 또한 '23년 2월에는 1명(○○○○○○○○○○에서 근무한 ○○○)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미제출하였는데도 선정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도지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 응모방법, 지원·선정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운영지원과)은 '20년부터 '23. 4월까지 선정절차에 대한 결재·공고없이 업무경력 점수를 최소 7점에서 최대 70점까지 담당부서에서 임의 평가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2. 수산업경영인선정전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 해수부의 「'22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시행지침」 IV. 사업추진체계에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이고, 도 업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 그런데 과학원(완도지원 등 9개 부서)은 '22년부터 '23. 4월까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을 미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 공수산질병관리사 선정 시에는 선정절차 등을 결재·공고하고, 업무정지 처
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확인하며, 관련 지침을 따라 ○ ○ ○ ○ ○
○ ○ ○ ○ ○ ○ 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도록 “주의요구”

②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사업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 위 과학원(완도지원 등)은 '20년부터 '22년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기술·경영 등 교육·지도비로 창업어가 멘토 62명에게 보조금 3억 6천만원을 지원·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
-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등에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완도지원 등 8개 부서)은 '20년부터 '22년까지 창업어가 멘토 62명에게 총 3억 6,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기타소득세 등 3,168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을 부적정 정산

☞ 원천징수 미공제 3,168만원을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에 납부하도록 “시정요구”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③ 공가 사용 부적정

- 위 과학원(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총 772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의 공가 사용을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등에 소속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시 공가를 허가하고, 미사용 연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과학원(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 ○○○ 등 4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허가 받은 후 건강 검진을 미 실시하는 등 공가를 부적정 사용
- 또한 이 중 3명에게 연가보상비 36만원을 부당 지급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가를 사용하도록 “주의요구”
☞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 3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4 행사실비지원금 및 행사운영비 지출 부적정

- 위 과학원(운영지원과 등 11개 부서)은 '20. 5월부터 '23. 4월까지 행사실비 지원금 49억 7,342백만원과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지출
-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기준단가 8천원 이내) 및 교통비, 산업시찰·전학 등을 위한 실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과학원(운영지원과 등 11개 부서)은 '20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행사실비지원금을 지출하면서 매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식사·다과, 등 총 501건, 1억 4,58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
-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행사운영비는 행사개최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강사료 등을 지출하고, 공무원 포상은 포상금으로 지출하며, 인쇄물 등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운영지원과)은 '21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발표회 포상(상품권), 연구노트 제작* 등 총 2건, 3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

* 올바른 지출과목 : 포상금 및 사무관리비

☞ 앞으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행사실비지원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지출하도록 "주의요구"

⑤ 건축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

- 위 과학원(장흥지원 등 6개 부서)은 '20. 5월부터 '23. 4월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20건을 추진
-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장흥지원 등 2개 부서)은 '21. 12. 16.부터 '22. 10. 29.까지 ○○○○ ○○건립공사 등 3개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 885만원을 미감액한 채 준공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공사 미시공 공종에 대한 미회수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 액 (천원)	조치 내용
계	3건					8,857	
1	○○○○ ○○ ○○공사	'21.12.16.~ '22.08.12.	(유)○○○○ (○○○)	1,087,103	- 계단논슬립 미설치, 인력 터파기 정산, 환경관리비 정산 등	5,875	회수
2	○○○ ○○○ 공사	'22.07.14.~ '22.08.11.	(주)○○○○ (○○○)	202,06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증빙 미첨부 등) 정산	1,182	회수
3	○○○○○ ○○○ ○○○○ ○○○ ○○ 공사	'22.04.19.~ '22.10.29.	○○○○(주) (○○○)	297,760	- 수평기준틀(귀, 평) 미시공 등	1,800	회수

☞ 계단 논슬립 미설치 등 설계변경 및 금액조정 대상 3건 885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부적정

- 위 과학원(운영지원과 등 15개 부서)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관리, 물품 구입 및 재물조사 업무를 수행

1.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 미등록

- 「공유재산법」 제4조에 지자체장은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1억원 이상의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도록 규정
-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에 건물, 시설물 등을 등록대상으로 신청하도록 하도록 안내 함
- 그런데 과학원(완도지원)은 '19. 7. 15. 취득한 용존산소량측정기 1건(1억 1,550만원)을 '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복구공제 미등록

2. 정수승인 대상물품 정수 배정 및 심사없이 부적정 취득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지자체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도 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물품 구입시 정수관리대상 물품 포함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운영지원과)은 '20. 4월부터 '21. 10월까지 노트북 등 5건 716만원의 물품을 정수물품 배정 및 심사없이 부적정 취득

3. 정기 재물조사 시 전자태그 미부착

- 「공유재산법」 제60조 등에 지자체장은 물품을 1년마다 재물조사하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규정
- 또한 「물품관리 정기재물조사지침」(행정안전부), 및 「도 재물조사 계획」에 재물조사는 전자태그단말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미부착 물품은 사전에 부착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운영지원과 등 15개 부서)은 '22. 10. 4.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자태그 부착대상 5,476개 중 2,510건을 전자태그 미부착한 채로 재물조사 실시

- ☞ 앞으로 정수관리대상물품은 정수 배정 및 심사 후 취득하고, 정기재물조사 사전에 전자태그 부착하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 재해복구공제 미등록된 용존산소량측정기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제에 등록 하도록 **“시정요구”**

7 신용카드 전용계좌 입금·지출 등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 위 과학원(운영지원과 등 16개 부서)은 '23. 5. 9. 감사일 현재 96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용대금을 신용카드 전용계좌에 입금·지출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 중

1. 신용카드 전용계좌 입금·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 「지방회계법」 제29조 등에 지출원인행위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하고, 지출원은 정당한 채권자에게만 금고에 지급명령 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통신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회계관리 훈령」(행정안전부) 제37조의2 등에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카드사용대금을 입금받고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은 '21. 3. 16.부터 '22. 1. 26.까지 회계담당자 ○○○이 카드사용대금 연체 사유로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총 4차례 현금 304만원을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부적정 입금
 - 또한 '21. 6. 8.부터 '22. 5. 9.까지 304만원을 4차례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신용카드 전용계좌에서 ○○○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지연 등 회계처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등에 지자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회계관리 훈령」 제13조 등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은 집행금액 의사결정(품의) 하고, 가격비교 후 신용카드 지출 결정(원인행위)하며, 결제일 도래 전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완도지원 등 12개 부서)은 '20년 5월부터 '23년 3월까지 총 191회 6,004만원을 지연 지급하여 연체료(5만원) 발생
- 또한 연체료 중 2만원은 회계담당자가 개인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3만원은 카드사용대금에서 출금되게 하는 등 회계처리 부적정

3. 신용카드 적립금 세입처리 미 실시

- 「회계관리 훈령」 제120조에 지자체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은 '20. 1월부터 '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적립금 7건 15만원을 세입 미처리

- ☞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입금·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회계담당자 **“훈계요구”**
- ☞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대의 지연 입금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 적립금은 1년 1회 이상 세입처리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 회계담당자가 신용카드 전용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8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과학원(완도지원 등 14개 부서)은 14개소의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안전진단업무를 수행

1.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업무처리 부적정

- 「연구실안전법」 제19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
- 또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침」(과기부) 제12조에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기관에 유해인자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과학원(완도지원 등 14개 부서)은 '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및 보고서 미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등에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 관리실태를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염산 등 유해인자 348개를 취급
-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과학원(완도지원 등 14개 부서)은 '20년, '21년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미실시하였고, '22년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앞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2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공표하도록 **“시정요구”**

9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미등록 등 건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과학원(운영지원과 등)은 '20. 5월부터 '23. 4월까지 211건의 공사 및 용역 추진

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미등록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 체결, 변경 계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CEMS)에 등록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 등 4개 부서)은 '20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 '○○○○○○○○○○ ○○○○ ○○○○ ○○ 용역' 등 건설기술용역 4건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미등록
 - 그로 인하여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적기에 등록하지 못하여 다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2. 지반 조사결과 전산화 미실시

-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지침」 46조 등에 발주청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전산화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장흥지원)은 지반조사를 수반하는 '○○○○○ ○○○○ ○○○○ 용역'을 '21. 9. 16. 완료하고도 '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미실시

3. 준공검사자 선임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7조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계약금액이 3억원 초과하는 공사계약은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운영지원과)은 '22. 11. 25. 계약금액 3억원을 초과하는 '○○○○○ ○○○○ 공사(○○○○)'의 준공검사를 공사감독관으로 부적정 선임

☞ 앞으로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등록과 지반조사 결과 전산화를 기한 내 누락없이 실시하고, 계약금액 3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는 공사 감독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0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과학원(완도지원 등 12개 부서)은 '20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211건의 공사를 준공 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20조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과학원(완도지원 등 12개 부서)은 '20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하자검사를 442회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392회만 실시하여 50회 미실시
 - 또한 '○○ ○○○○ ○○○○ ○○○공사' 등 27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도 미실시

☞ 앞으로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종하자검사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① 법인카드 사용 등 회계관리 부적정

- 도서관(정책운영팀 등 2개팀)은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1.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서관(정책운영팀 등 2개 부서)은 '20년부터 '23년 3월까지 38회 386만원의 이용대금을 최소 1일, 최대 708일까지 지연 입금
 - 또한 '21. 5. 13.에 카드이용대금 15만원을 '23. 5. 4. 감사일 현재까지 결제계좌로 입금 미조치하여 회계관리 부적정

2. 수납금의 세입처리 지연

- 「지방회계법」 제22조에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에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서관(정책운영팀)은 '20년부터 '22년까지 복사 및 출력비용 545만원을 받아 적게는 1일, 많게는 312일 동안 지연하여 세입처리
 - 또한 '22. 12. 23.부터 '23. 4. 30.까지 징수한 복사기 등 사용료 104만원을 '23. 5. 4. 감사일 현재까지 적게는 4일, 많게는 131일 동안 사용료 계좌에 납입한 채 금고에 납입 미조치

☞ 징수한 사용료 104만원을 세입처리 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결제일까지 계좌에 입금하고, 사용료 등 수납금의 세입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주의요구”

② 공가 사용 부적정

- 위 도서관(정책운영팀 등 2개팀)은 '20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소속 직원의 건강검진 대한 공가 사용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5호에 지사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 또한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등에 부서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도서관(정책운영팀 등 2개 부서)은 '20년부터 '23년 3월까지 ○○○ 등 5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 허가 후 건강검진 미실시하는 등 공가를 부적정 사용
 - 또한 이 중 3명에게 연가보상비 30만원을 부당 지급

☞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 30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도록 “주의요구”

③ 행정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 도서관(정책운영팀)은 '20. 1월부터 '23. 3월까지 행정재산을 ○○○○○ 등으로 사용허가 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지자체장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도서관(정책운영팀)은 '20년부터 '23년 3월까지 ○○ 등 사용자인 ○○○ 등 2명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연 2회부터 4회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하면서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을 미가입하도록 방치
 - 또한 ○○ 등 사용을 신규허가하면서 '23년 공제비용 21만원을 미징수

※ 감사기간 동안 확인한 결과 '20년부터 '22년까지 공제비용(매년 약 21만원) 미징수

< 행정재산 사용료 분납 및 공제비용 미부과 현황 >

재산의 종류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료 분납		공제비용 미징수	
			금액(천원)	납부방법	기간	비용(천원)
○○○○○	○○○	'20.04.01.~ '23.03.31.	(1년차) 35,000 (2년차) 35,578 (3년차) 35,901	매년 4회 분할 납부	'23.04.01.~ '23.12.31.	174
○○○○○	○○○	'20.03.09.~ '22.10.24.	(1년차) 6,939 (2년차) 7,052	매년 2회 분할 납부	-	-
	○○○	'22.12.16.~ '25.12.15.	1년차 7,706	일시 납부	'22.12.16.~ '23.12.31.	45

☞ ○○○○○ 등 사용자에게 '23년 공유재산 공제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앞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자가 사용료를 분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시 손해보험이나 공제비용을 징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④ 분할발주 수의계약 및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도서관(정책운영팀)은 '20. 1월부터 '23. 3월까지 135건, 13억 6,929만원의 공사 및 용역·물품 1인 건적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완료 시 검수업무 수행

1. 분할발주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2인 이상 건적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에 단일공사로서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공사량으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 계약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서관(정책운영팀)은 '21. 10월부터 '22. 12월까지 '○○○ ○○○○ ○○' 등 4건의 공사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등 15건으로 분할발주 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 다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율 90%를 적용하여 예산 낭비는 없음을 확인

2. 공사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7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완료 시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6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은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도서관(정책운영팀)은 '20. 1월부터 '23. 3월까지 '○○○○○○ ○○○○○○ ○○ 공사' 등 48건(18억 2,347만원)에 대해 검사조서를 미작성하고 준공검사 없이 대가를 지급

☞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단일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단일계약으로 체결하고, 기성·준공(납품)검사 시 검사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①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박물관(학예연구실)은 '19년부터 '23. 4월까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 등을 구성·운영

1. ○○○○○ 위촉 업무 처리 부적정

-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등에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박물관(학예연구실)은 '19년부터 '23년까지 ○○○○○ 위원을 10명부터 15명까지 위촉하면서 ○○○ 등 6명을 2회 연임하여 부적정 위촉

<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현황 >

구분	당초 ('19.02.11.~'21.01.21.)	1회 연임 ('21.01.22.~'23.02.12.)	2회 연임 ('23.02.13.~'25.02.12.)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2.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전라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20년부터 '22년까지)」 7.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액 편에 2시간 이내에는 10만원으로 규정
- 그런데 위 박물관(학예연구실)은 '20. 5월부터 '22. 5월까지 ○○○ 등 26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 20만원씩 지급하여 총 260만원을 파다 지급

☞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② 불법건축물 시설 및 관리 부적정

- 위 박물관(관리팀 등 2개팀)은 '20. 2월부터 '23. 4월까지 박물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
- 「건축법」 제11조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박물관(관리팀 등 2개팀)은 '창고, 축사' 등 5개소를 신축하면서 군수 허가없이 불법으로 건축하면서 7,671만원을 집행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 농업박물관 위반건축물 현황 >

(단위 : m², 천원)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시설일	사업비
	소관부서	위 치	위반내용	용 도	위반면적		
계	5개소				104.45		76,710
1	관리팀	영암군 삼호읍 ○○리 ○○○번지	건축법 제11조 (무허가 건축물)	창고	26.45	'93년	2,400
2	학예연구실	영암군 삼호읍 ○○리 ○○○○번지	"	축사(염소)	18.0	'15.06.28.	16,442
3	"	영암군 삼호읍 ○○리 ○○○○번지	"	축사(양)	18.0		16,442
4	"	영암군 삼호읍 ○○리 ○○○○번지	"	축사(토끼)	32.0		10,726
5	"	영암군 삼호읍 ○○리 ○-○번지	"	화장실	10.0	'21.04.30.	30,700



불법건축물 부지의 용도,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화 또는 철거방안을 검토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통보"**

③ 대체휴무 운영 및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 위 박물관(관리팀 등 2개팀)은 '20. 2월부터 '23. 4월까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을 관리

1. 대체휴무 운영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지자체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제4장에 대체휴무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박물관(관리팀 등 2개팀)은 '21. 10월부터 '23.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4회의 주말농부장터 토요일 근무에 따른 53건의 대체휴무를 부서장 승인 없이 실시하는 등 대체휴무를 부적정하게 운영

2.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 「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 등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일 하루 전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차량배차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박물관(관리팀, 학예연구실)은 '22. 5월부터 '22. 12월까지 ○○○ 등 4명의 출장공무원이 차량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공용차량을 부적정하게 관리

👉 부서장의 승인 없이 실시한 53건의 대체휴무를 부서장에게 사후승인을 받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대체휴무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공용차량 사용 시 차량 배차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위 박물관(관리팀)은 '21. 3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2,697만원의 ○○○○○○ 설치공사를 추진
-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계약담당자는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시기적·공사량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박물관(관리팀)은 '21. 2월부터 '21. 5월까지 ○○○○○○ 설치공사를 2회로 분할 수의계약 체결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 공사 낙찰률 87.745%를 적용하여 예산낭비는 없었음

< 분할계약 한 1인 건적 수의계약 현황 >

(단위: 천원)

계약일	공사명	계약상대자	사업비	계약금액
	2건		30,744	26,977
'21.02.26.	○○○○○ ○○○○○○ 설치공사	(주)○○○○○	21,912	19,227
'21.05.06.	○○○○○ ○○○ ○○○○○○ 설치공사	(주)○○○○○	8,832	7,750

☞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모범사례

1 김 신품종 종자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높은 김 신품종 개발·보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배경

- 우리도 해역을 중심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김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우리도 대표 김 품종 해풍1호(일명 슈퍼김) 종자배양 어업인 통상실시로 김 종자산업 안정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3년간)
- 사업비: 139백만원
- 사업내용: 우량모조 수집, 김 신품종 개발 및 어가보급, 기술지도 등
 - ※ 직접분양 : 해풍2호(방사무늬김), 해모돌1호(모무늬돌김), 햇바디1호(잇바디돌김)
 - 통상실시 : 해풍1호(방사무늬김)

□ 추진실적

- (품종개발) 김 신품종 개발(4품종)
 - 품종등록(3품종) : 해풍1호('15년), 해풍2호('19년), 해모돌1호('17년)
 - 품종출원(1품종) : 햇바디1호('20년)
- (종자보급) 김 신품종 종자 분양·보급
 - '22년 종자분양 : 85개소, 분양량 8,183g, 예상생산량 130,267톤

* ('11년~22년) 782개소, 분양량 44,336g, 예상생산량 1,198,115톤

- 2022년산 전남 김발 시설량(919,228책) 대비 20%(183,557책) 시설

구 분	분양량(g)	개소	시설책수	예상생산량 (톤)	예상생산액 (억원)	물김평균가격 (원/kg)
합 계	8,183	85	183,557	130,267	1,562	-
해풍1호	2,211	28	73,700	68,983	540	783 (22년산 기준)
해풍2호	530	6	17,666	16,535	129	783 (22년산 기준)
해모돌1호	1,160	18	38,666	13,919	154	1,108 (22년산 기준)
햇바디1호	4,282	33	53,525	30,830	739	2,400 (22년산 기준)

○ (통상실시) 해풍1호 통상실시로 1억 526만원 업체소득 증가

(’21년) 통상실시 계약 체결, 3개소, 총판매예정수량 4,500g

- 종자분양 : 28개소, 분양량 2,211g, 업체소득 4,422만원

(’22년) 통상실시 계약 체결, 5개소, 총판매예정수량 4,000g

- 종자분양 : 33개소, 분양량 3,052g, 업체소득 6,104만원

□ 기대효과

○ 고품질 신품종 잇바디돌김 분양으로 김 양식어업인 소득증대

○ 통상실시 추진으로 종자 배양시장 안정화 유도 및 소득원 확보

2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이용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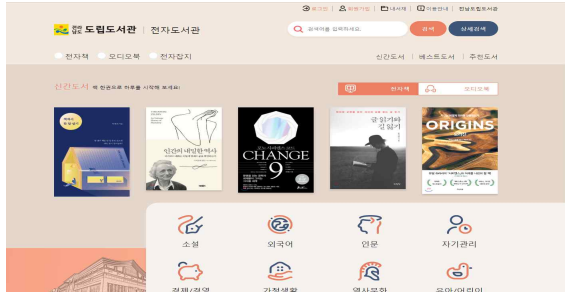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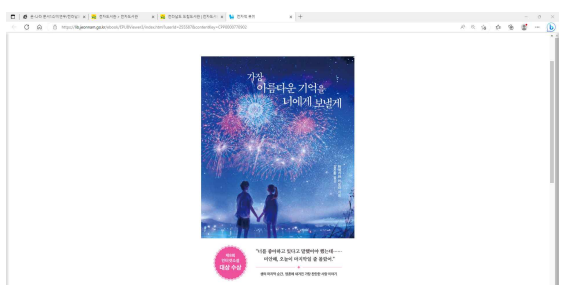
도민이 도립도서관 방문 없이 전자도서를 이용하도록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편의성 높이고 증가하는 비대면 도서 수요에 대응

□ 추진배경

- 대출 매체 중 전자도서 수요 증가 추세 : ('19년)16.5% → ('21년)19%*
- * 참고 : 2021 국민독서 '실태조사 연간 매체별 비교(성인) 중 전자책'
- 디지털 기기, 온라인 정보 이용 확대에 따른 웹 기반 서비스 강화 필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7. ~ '22. 10.
- 투입예산 : 75백만원(도비 100%)
- 주요내용
 - 반응형 웹 기반 전자도서관 페이지 구축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등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안정적 운영
 - 비대면 전남도민 인증절차를 통해 통합전자도서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 이용 접근성을 강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대면 도서 콘텐츠 운영의 안전성 확보
 - 도민들이 각자 원하는 다양한 공급업체의 도서를 모두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뷰어 전격 도입

	
반응형 웹 구현	통합 뷰어 도입

□ 추진내용

가. 통합전자도서관 구축

-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구현
- 이용자 편의성 및 정보제공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화면 구성
- 분리 제공했던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를 통합전자도서관에서 일괄 제공
- 다양한 공급업체 도서를 위한 통합 뷰어 도입

나. 통합전자도서관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 도립도서관 홈페이지 신규 가입자나 기존 웹 회원도 비대면 전남도민 인증 서비스를 통해 전자도서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 (기존) 전자도서관 회원가입은 도립도서관에서 대면 인증 후 가능

회원가입 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거주지 확인 가능 → 전남도민인증 완료

□ 기대효과

- 회원가입 절차를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도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증가
 - 이용자 수 증가 : ('20) 1,745명→('21) 2,462명→('22) 2,799명('21년 대비 13%증)
- 기존에는 각 제공 업체별로 전자도서 뷰어가 달라 이용이 불편했으나, 통합뷰어를 제공함으로써 간편하고 일관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전자도서 구입량 증가 : ('20) 1,479권→('21) 1,341권→('22) 3,895권('21년 대비 190% 증)

3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말 농부장터 운영

영산호관광지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 지역사회 소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박물관 주말농부장터 추진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줄어든 관람객 증대와 도심에서 떨어진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 필요
- 영산호관광지내 상가와 박물관 인근 농가의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박물관의 외연 확대

□ 사업개요

- 운영일시 : 2023년 봄철 4회, 가을철 4회 * 격주 토요일 운영
- 장소/시간 : 농업박물관 정문 광장 / 11:00 ~ 15:00(4시간)
- 사업비 : 30백만원(도비 100%)
 - '21년 15백만원, '22년 50백만원, '23년 30백만원
- 사업내용 : 박물관 관람·어린이 체험행사와 연계하여 지역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상품판매 행사
 - 참여대상(27개) : 사회적경제기업(6), 영농조합법인(10), 스마트팜(1) 지역 농업인(10)

□ 추진실적

기간	방문(명)	참여업체(개소)	어린이체험(명)
'21.10. ~ 11월(3회)	2,880	3	540
'22.04. ~ 11월(8회)	8,220	20	1,548
'23.04. ~ 05월(3회)	2,650	20	300

* '23년 주말농부장터 목표(방문객 12,000명 / 판매 참여업체 25개소 / 매출액 50,000천원)

○ '23년 주말 농부장터 이전 대비 관람객 대폭 증가

▶ 주말장터 미 운영	'23. 3. 25. 780명	⇒	'23. 4. 8. 380명	⇒	'23. 4. 22. 418명
▶ 주말장터 운영	'23. 4. 1. 1,200명 (54%↑)	⇒	'23. 4. 15. 1,000명 (163%↑)	⇒	'23. 4. 29. 450명 (8%↑, 기상악화)

○ 농업박물관 주변 상권 매출 증가 등 활성화에 기여

- (인근식당) 1,000천원 → 1,800천원 (카페) 5,000천원 → 6,500천원
- (숙박업소) 25개실 → 30개실

□ 기대효과

○ 지역 상권과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 수행

- 지역농업인 및 영농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스마트팜 등의 판로 확대

○ 어린이 무료체험, 방문선물, SNS이벤트 등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향상

- 설문조사(만족) : 판매가격 84%, 체험 86.7%, 시설 등 92.6%

○ 영산호관광지 및 농업박물관을 찾는 방문객 지속적 증가에 기여

- '20년) 6만명 → '21년) 9만명 → '22년) 17만명 → '23년) 7만명(3월 기준)

IV. 처분요구

목 차

〈해양수산과학원〉

① 공수산질병관리사 선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30
②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사업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36
③ 공가 사용 부적정(시정, 주의)	40
④ 행사실비지원금 및 행사운영비 지출 부적정(주의)	43
⑤ 건축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47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부적정(시정, 주의)	50
⑦ 신용카드 전용계좌 입금·지출 등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통보) ..	55
⑧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61
⑨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미등록 등 건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65
⑩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69

〈도립도서관〉

① 법인카드 사용 등 회계관리 부적정(시정, 주의)	72
② 공가 사용 부적정(시정, 주의)	75
③ 행정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통보)	78
④ 분할발주 수의계약 및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81

〈농업박물관〉

①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85
② 불법건축물 시설 및 관리 부적정(통보)	88
③ 대체휴무 운영 및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시정, 주의)	90
④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93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수산물질병관리사 선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물과학원(운영지원과, 완도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목포지원, 영광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장흥지원, 진도지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물과학원(이하 “해양수산물과학원”이라 한다)은 2020년부터 2023. 4월까지 도내 양식장 질병 관리를 위하여 공수산물질병관리사 68명을 선정하여 월 8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수산업경영인선정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업인후계자 등 수산업경영인을 평가·선정하고 있다.

2. 공수산물질병관리사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산물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5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물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물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물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물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수산물생물의 진료, 수산물생물질병의 조사·연구, 수산물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수산물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7조의12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9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2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6 제1항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법 제37조의17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의 기간을 적고,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제출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자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공고문을 도보나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과학원은 2020년부터 2023. 4월까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등 자격요건¹⁾을 갖춘 공수산질병관리사를 매년 15명에서 18명까지 선정하여 도내 양식장을 월 10회 이상 점검하고 그 대가로 월 85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부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도록 하면서 [표 1] “공수산질병관리사 모집 공고 및 선정 현황”과 같이 전남도 및 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고·선정하였다.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도내에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법」에 따라 도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표 1] 공수산질병관리사 모집 공고 및 선정 현황(2020.2월~2023.2월)

연도	공고일	공고번호	모집인원	신청인원	선정일	선정인원
2020년	2020.02.12.	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0-8호	15명	19명	2020.02.25.	15명
2021년	2021.02.04.	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1-8호	17명	18명	2021.02.18.	17명
2022년	2022.01.10.	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2-4호	18명	18명	2022.01.21.	18명
2023년	2023.01.09.	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3-3호	18명	22명	2023.02.03	18명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선정할 경우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에 대한 휴업·폐업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수산질병관리원으로부터 신고필증 앞·뒤쪽을 제출받아 업무정지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²⁾가입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산질병관리원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무경력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은 2020년부터 2023. 4월까지 [별표 1]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관련 확인 부적정 명세”와 같이 총 68명의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선정하면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 55명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폐업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로부터 신고필증 앞면만을 제출받아 신고필증 뒤쪽의 업무정지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지 않은 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23. 2. 3.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선정하면서 수산질병관리사 ‘○○○’이 2015. 7. 1.부터 2020. 6. 4.까지 ○○○○○○○○○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선정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3. 4월까지 공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선정절차에 대

2)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한 결재 및 공고없이 [표 2] “임의 평가한 공수산질병관리원 업무경력 평가 기준 현황”과 같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관련 업무경력에 대하여 최소 7점을, 10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에 대하여 최대 70점 등 7점씩 가감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등 담당 팀에서 업무경력 점수를 임의 부여하여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임의 평가한 공수산질병관리원 업무경력 평가 기준 현황

(단위 : 점)

평가항목	해당점수	세부평가 기준	
		점수	세부평가
관련 업무경력	70	70	10년 이상
		63	9년 이상 ~ 10년 미만
		56	8년 이상 ~ 9년 미만
		49	7년 이상 ~ 8년 미만
		42	6년 이상 ~ 7년 미만
		35	5년 이상 ~ 6년 미만
		28	4년 이상 ~ 5년 미만
		21	3년 이상 ~ 4년 미만
		14	2년 이상 ~ 3년 미만
		7	1년 이상 ~ 2년 미만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수산업경영인선정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

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2022. 1. 3. 해양수산부는 「2022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이차보전) 시행지침」 IV.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신청단계에 따르면 각 시·도는 수산업경영인의 공정한 선정·평가를 위하여 수산업경영인선정전문심사위원회(이하 “수산업전문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①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 업무 담당공무원 1명, ②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수산 관련 담당공무원 2명, ③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용자취급부서 임직원 1명, ④위원장이 위촉한 수산계학교 교사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1명, ⑤위원장이 위촉한 어업인 대표 3명으로 어촌계장, 수산 신지식인, 시·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면서, 수산업경영인 선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 ○○○○○○○○○○이 당연직으로 조정되었음을 시·도에 공문³⁾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2022년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평가를 위하여 수산업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목포지원, 영광지원,

3) 해양수산부 ○○○○과-○○○(2022.01.13.), 2022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배정계획 알림
(2021년까지는) ⑤위원장이 위촉한 어업인 대표 3명은 어촌계장, 수산 신지식인, 시·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및 선도우수경영인 중 위촉
(2022년부터는) 수산업경영인 선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 ○○○○○○○○○○을 당연직으로 조정

강진지원, 해남지원, 장흥지원, 진도지원)은 2022. 1월부터 2023. 4월까지 수산업 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도 수산업경영인연합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여여야 하는데도 [별표 2] “수산업경영 인선정전문심사위원회 부적정 구성 명세”와 같이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 ○○○○○○○○○○○○○○○○○○○○○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은 채 수산 업경영인 선정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 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선정 할 시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휴업·폐업 등을 확인하도 록 하고, 업무정지 처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결재 및 공고 절차를 준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수산업경영인 선정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 ○○○ ○○○○○○○○○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사업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목포지원, 영광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진도지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2020년부터 2023. 4월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기술·경영 등 교육·지도를 목적으로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

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제19호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¹⁾)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

1) 2019. 1. 1. 이후 수당 등 지급액은 125,000원 / 필요경비 공제율 60% / 원천징수 세율 8.8% / 과세최저한 5만원

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항 제1호·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해양수산과학원은 2020년부터 2023. 4월까지 귀어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제조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 10년 이상 종사 어업인 등을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월 6회 이상 기술·경영 등 교육·지도비용으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사업자에게 교육·지도비를 지급할 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목포지원, 영광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진도지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사업자 62명에게 교육·지도비용으로 총 360,000천원을 지급하면서 [표]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및 [별표]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공제 세부 명세”와 같이 총 62명에게 기타소득세 등 31,680천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정산하였는데도 20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명, 천원)

연도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사업비 집행현황	원천징수 미공제 내역	비고
총	62명	360,000	31,680	
2020년	21	120,000	10,560	
2021년	21	120,000	10,560	
2022년	20	120,000	10,560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 ①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사업자 62명에게 공문으로 안내하는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공제 31,680천원을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납부하도록 하시고(시정)
- ② 앞으로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공가 사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완도지원, 목포지원, 해양수산과학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2020. 4월부터 2023. 3월까지 총 772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의 공가 사용을 허가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 공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소속 직원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 허가를 받은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연가보상비 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완도지원, 목포지원, 해양수산과학관)은 2020. 4월부터 2023. 3월까지 [표]와 같이 목포지원에 근무하는 ○○○○0급 ○○○ 등 4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공가 허가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다른 날짜에 건강을 받았는데도 공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공가를 부적정하게 허가하였고, 목포지원 ○○○○0급 ○○○ 등 3명에게 연가보상비 365,59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건강검진 관련 부적정 공가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적정지급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건, 원)

연도	부서	직급	성명	건강검진 사유 공가일	실제검진일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액	비고
		4명				365,590	
2020	목포지원	○○○○0급	○○○	2020.08.21.	2020.09.08.	143,090	
2020	완도지원	○○○	○○○	2020.12.04.	검진내역없음	109,600	
2022	해양수산과학관	○○○○	○○○	2022.12.05.	2022.12.01.	112,900	
2022	운영지원과	○○0급	○○○	2022.03.07.	검진내역없음	0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① 부당한 공가 사용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3명에 대하여 365,590원을 회수하고(시정)

② 앞으로 소속 직원들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복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실비지원금 및 행사운영비 지출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완도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목포지원, 영광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행사실비지원금 497,342천원과 행사운영비 9,000천원을 지출하였다.

2. 행사실비지원금 지출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은 ①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②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③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④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라 한다)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의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천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행사실비지원금을 지출할 시에는 8천원 이내의 급량비 및 교통비,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완도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목포지원, 영광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별표]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지출 명세”와 같이 매식비 단가 8천원을 초과한 식사 및 다과 제공 및 답례품·물품·소모품 구입, 교재·플래카드 제작, 강사 수당, 공무원 식사 제공 등으로 총 501건, 145,803천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3. 행사운영비 지출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은 ①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②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③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④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로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로 되어 있으며,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되어 있다.

또한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시험연구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우수과제 발표회에 따른 임차료, 강사료 등은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포상금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등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은 2021년 시험연구사업 우수사업 발표회를 하면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고, 연구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험연구노트 제작비를 행사운영비에서 부적정하여 지출하는 등 [표] “행사운영비 부적정 지출 현황”과 같이 총 2건 3,0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표] 행사운영비 부적정 지출 현황(2021년)

(단위 : 원)

회계연도	지출된 과목	지급일	적요	지출액	올바른 지출과목
		2건		3,000,000	
2021년	행사운영비	2021.11.30.	○○○○○○○ ○○○○ 발표회 포상 구입	1,800,000	포상금
2021년	행사운영비	2021.12.07.	2022년 ○○○○○○ ○○○○ ○○ 연구노트 제작	1,200,000	사무관리비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행사실비지원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건축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흥지원, 자원조성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 청사건립 공사 등 1억원 이상 건설공사 20건을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단논슬립 미설치 등 설계변경 및 금액조정 대상 3건 8,857,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완도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 목포지원, 영광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처분·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 등록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0. 12. 7. 전라남도 회계과에서 통보받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정기등록 신청 안내¹⁾에 따르면 재해복구공제 등록 대상은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건물 구조체, 마감재, 부대설비)과 시설물(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로 되어 있고, 다만 기동성 있는 물건,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등 전시품,

1) 전라남도 회계과-○○○○○○(2020. 12. 7.) 2021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정기등록 신청 안내

조각품, 미술품, 문화재, 광물, 식물, 동물류, 귀금속, 보석, 유가증권, 설계서, 원고, 도안, 증서,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물과 집기비품, 기계·설비 등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은 [표 1]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 미등록 현황”과 같이 2019. 7. 15.에 115,499천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용존산소량측정기에 대하여 20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1]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 미등록 현황

(단위 : 천원)

담당부서	물 품 명	규 격	취득일자	취득단가
완도지원	용존산소량측정기	용존산소측정기, Ponsel, (FR)OPTOD, (부품)센서	2019.07.15.	115,499,990

제출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정수승인 대상물품 정수 배정 및 심사없이 부적정 취득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주관 부서의 장이 물품매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취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은 2020. 4월부터 2021. 10월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관리대상 물품 승인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표 2] “정수물품 미승인 구매 현황”와 같이 비디오프로젝터 등 5건 7,165천원의 물품을 부적정하게 취득하였다.

[표 2] 정수물품 미승인 구매 현황(2020.4월~2021.10월)

(단위 : 천원)

연번	물 품 명	규 격	취득일자	취득단가
합계	5건			7,165
1	비디오프로젝터	비디오프로젝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GL-650W, 5000ANSI lm	2020.04.17	2,101
2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OEM)삼성전자, CN/NT550XDA-KG03G, Intel Core i5 1135G7(2.4GHz)	2021.10.13	1,266
3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OEM)삼성전자, CN/NT550XDA-KG03G, Intel Core i5 1135G7(2.4GHz)	2021.10.13	1,266
4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OEM)삼성전자, CN/NT550XDA-KG03G, Intel Core i5 1135G7(2.4GHz)	2021.10.13	1,266
5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OEM)삼성전자, CN/NT550XDA-KG03G, Intel Core i5 1135G7(2.4GHz)	2021.10.13	1,266

제출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4. 정기 재물조사 시 전자태그 미부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을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정기재물조사 지침」²⁾ 및 「전라남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추진계획」³⁾에 따르면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단말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재물조사를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전자태그단말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 등의 경우에는 재물조사 전에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완도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 목포지원, 영광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은 2022. 10. 4.부터 같

2) 행정안전부 ○○○○과-○○○○(2022. 4. 27.) 2022년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안내

3) 전라남도 회계과-○○○○○(2022. 9. 6.) 2022년 물품 정기재물조사 세부 추진계획 알람

은 해 10. 14.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별표] “전자태크 미부착 물품 현황”과 같이 전자태그 부착대상 5,476개의 물품 중에서 2,966개만 부착하고 2,510개의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 ① 앞으로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취득하도록 하고,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 등의 경우에는 재물조사 전에 전자태크를 발행·부착하도록 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 ② 재해복구공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용존산소량측정기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신용카드 전용계좌 입금·지출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

훈 계 대 상 자 전라남도 ○○○○○과 ○○○○○○○○○○○○○○○○○○○(0000.00.00.)
(前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96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사용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다.

○ ○ ○ ○ ○ ○ ○ ○ ○ ○ ○ ○ ○ 은 2020. 7. 27.부터 2022. 8. 11.까지 해양수산과
학원 ○ ○ ○ ○ ○ ○ ○ ○ 에서 신용카드 전용계좌 카드사용대금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신용카드 전용계좌 입금·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라 한다) 제37조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2. 계좌운영·관리에 따르면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구매카드 결제계좌는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구매카드 사용대금만 입금받고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원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의 절차를 거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입금하여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신용카드 전용계좌에 입금할 때에는 지출원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의 절차를 거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입금하여야 하는데도 2021. 3. 16.부터 2022. 1. 26.까지 [표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미이용 입·출금 부적정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연체를 사유로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 개인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부적정하게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입금하였다.

또한 2021. 6. 8.부터 2022. 5. 9.까지 [표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미이용 입·출금 부적정 현황”과 같이 카드사용대금 3,039,583원을 4차례에 거쳐 ○○○○○○○ 회계업무담당자인 ○○○이 신용카드 전용계좌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출금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미이용 입·출금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거래일시	입금액	출금액	거래방법	기록사항	비고
총계	3,040,000	3,039,583			
2021.03.16. 10:10	400,000		인터넷뱅킹	○○○	
2021.06.08. 12:08		399,583	현금자동지급기기 이체	○○○	카드 연체료 417원 미출금
2021.07.14. 09:37	1,240,000		인터넷뱅킹	○○○	
2021.08.09. 15:13		1,240,000	현금자동지급기기 이체	○○○	
2021.08.11. 10:11	400,000		인터넷뱅킹	○○○	
2021.08.18. 13:20		400,000	현금자동지급기기 이체	○○○	
2022.01.26. 10:10	1,000,000		인터넷뱅킹	○○○	
2022.05.09. 14:37		1,000,000	현금자동지급기기 이체	○○○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연 지급 등 회계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및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

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일에 도래하면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사용대금이 이체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해남지원, 강진지원,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별표] “신용카드 결제 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 명세”와 같이 신용카드 191회를 사용하면서 사용액 60,048,138원을 신용카드 결제일 이후에 지연하여 입금하여 52,113원의 연체료를 발생하게 하는 등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 52,113원 중 20,857원을 회계담당자가 개인 현금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하였고, 31,256원은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출금되게 하는 등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신용카드 적립금 세입처리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목포지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2] “신용카드 적립금 세입 미처리 현황”과 같이 7건 156,334원의 적립금이 발생하였는데도 20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신용카드 적립금 세입 미처리 현황

(단위 : 원)

소속	카드번호	발급일	미처리 내역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7건		156,334	59,715	21,463	75,156
운영지원과	9430-1604-0289-1579	2019.12.05.	25,360	-	-	25,360
	9430-1604-3468-5387	2020.09.07.				
해양수산과학관	9430-1604-0288-3626	2019.10.22.	28,390	13,360	6,790	8,240
섬진강어류생태관	5585-1144-2623-9878	2019.07.25.	18,546	710	1,473	16,363
	9430-1603-0449-0967	2019.08.24.	41,220	17,930	13,200	10,090
목포지원	9430-1602-7309-7546	2018.08.20.	22,319	17,041	-	5,278
	9430-1602-9275-8672	2019.04.20	20,499	10,674	-	9,825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 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입금·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0급 ○○○은 훈계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고(훈계)
- ②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지연 입금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적립금을 1년 1회 이상 세입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 ③ 회계담당자가 신용카드 전용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해남지원, 수산종자연구소,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 목포지원, 영광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14개소의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연구실의 기능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①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분석, ②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③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④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실 유해인자에 대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해남지원, 수산종자연구소,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 목포지원, 영광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은 2023. 5. 9. 감사일 현재 까지 14개소의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연구실안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로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0년과 2021년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2년은 (○)○○○○○○○○○○에 위탁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20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위탁업체	실시기간	공표여부
안전점검	미실시	미실시	(○)○○○○○○○○○○	2022.10.06. ~ 2022.10.20.	부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	2022.10.01. ~ 2022.10.30.	부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1) 해양수산과학원은 완도지원 등 14개 부서에서 황산 등 348개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어 정밀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에 해당됨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 ① 앞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관리하도록 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 ② 2022년에 실시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미등록 등 건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장흥지원, 섬진강어류생태
관,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211건의 공사 및 용역을 추진하였다.

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미등록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¹⁾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지역계획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요청에 대한 공문을 통보받았고, 위 내용을 2015년부터 총 4회²⁾에 걸쳐 해양수산과학원 등 전남도 실·과·소 등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 10일 이내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

1)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2014. 5. 23. 이후 용역실적은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결과만 인정토록 하고 있음

2) 전라남도 지역계획과-○○○○(2015. 4. 20.), 지역계획과-○○○○(2017. 3. 13.), 지역계획과-○○○○(2017. 3. 29.), 지역계획과-○○○○(2018. 3. 7.)

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 민물고기연구소, 장흥지원, 자원 조성연구소)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표 1]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같이 ‘○○○○○○○○○○ ○○○○ ○○○○ ○○○○ ○○○○ ○○○○ 용역’ 등 건설기술용역 4건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표 1]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미등록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업체	준공일 기준 등록 경과일
계	4개 용역	306,038			
1	○○○○○○○○○○ ○○○○ ○○○○ ○○○○ ○○○○ 용역	86,769	2020.11.02.~ 2020.12.21.	○○○○○ ○○○	869일 경과
2	○○○○○○○○○○ ○○○○ ○○○○ ○○○○ ○○ ○○○○용역	38,295	2020.11.04.~ 2020.12.23.	○○○○○ ○○○	867일 경과
3	○○○○○○○○○○○○○○ ○○○○ ○○○○ ○○ ○○○○ 용역	86,340	2021.05.20.~ 2021.09.16.	○○○○○○○○ ○○○ 외 4개	720일 경과
4	○○○○○ ○○ ○○○○ ○○○○ ○○○ ○○ ○○용역	94,634	2021.09.24.~ 2021.12.02.	(○)○○○○○ ○○○ 외 1개	602일 경과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적기에 등록하지 못하여 다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지반 조사결과 전산화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정보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1조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지반정보통합관리홈페이지³⁾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3)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 : 국토교통부는 전국토의 지반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위하여 2003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반정보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

또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생산하여야 하고, 지반정보는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지반정보 통합관리홈페이지에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장흥지원)은 [표 2] “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지반조사를 수반하는 ‘○○○○ ○○○○ ○○○○ 용역’을 2021. 9. 16.에 완료하고도 2023. 5. 9. 감사일 현재까지 지반조사 결과를 통합관리홈페이지에 전산화하지 않고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지반조사 결과 전산화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업체	지반조사량	준공일 기준 등록 경과일
○○○○ ○○○○ ○○○○ 용역	86,008	2021.05.20.~ 2021.09.16.	○○○○○○○○	시추조사2공	720일 경과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준공검사자 선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계약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공무원이 겸임하지 않도록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표 3] “준공검사자 선임 부적정 현황”과 같이 ○○○○ ○○○○ 공사(○○○○)의 계약금액이 3억원을 초과한 1,185백만원인데도 감독공무원을 준공검사공무원으로 겸임하도록 부적정하게 선임하였다.

[표 3] 준공검사자 선임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 ○○○○공사(○○○○)	1,185,092	2022.06.09.~ 2022.11.21.	(○)○○○○	○○○○ ○○○	○○○○ ○○○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등록과 지반조사 결과 전산화를 기한 내 누락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계약금액 3억원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는 공사 감독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지정하여 준공 검사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강진지원, 수산종자연구소, 여수지원, 고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 목포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표] “건설공사 추진현황”과 같이 211건의 공사를 준공한 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표] 건설공사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211	9,517	135	4,313	29	373	57	4,831

자료 : 해양수산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원은 공사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완도지원, 강진지원, 수산종자연구소, 여수지원, 고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 목포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 [별표]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하자검사 대상 211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442회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392회만 실시하여 50회를 실시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또한 ‘○○ ○○○○ ○○○○ ○○공사’ 등 최종검사 대상 27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종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등 회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립도서관(정책운영팀, 정보서비스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립도서관(이하 “도립도서관”이라 한다)은 공공자금을 통합계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카드이용대금 결제 계좌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라 한다) [별표 4]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및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도서관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일에 도래하면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사용대금이 이체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립도서관(정책운영팀, 정보서비스팀)은 [별표 1]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지연입금 및 미지출 명세”와 같이 2020. 1월부터 2023. 3월까지 38회 3,865천원의 이용대금을 적게는 1일, 많게는 708일을 지연하여 입금하였다.

또한 2021. 5. 13.에 ○○○○○○○○○○○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152천원을 2023. 5. 4.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 조치를 하지 않아 회계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수납금의 세입처리 지연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도서관은 각종 사용료를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립도서관(정책운영팀)은 [별표 2] “사용료 수납금 세입 지연처리 명세”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립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복사 또는 출력비용으로 5,458천원을 직접 수납받고 적게는 1일, 많게는 312일을 지연하여 세입처리를 하였고, 2022. 12. 23.부터 2023. 4. 30.까지 징수한 복사 또는 출력사용료

1,039천원에 대하여 2023. 5. 4. 감사일 현재까지 적제는 4일, 많게는 131일 동안
사용료 계좌에 납입한 채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립도서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
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립도서관장은

- ① 도립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1,039천원을 세입처리하시고(시정)
- ② 앞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결제일까지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하도록 하
고, 사용료 등 수납금의 세입을 지체없이 세입처리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
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공가 사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립도서관(정책운영팀, 정보서비스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관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직원들의 연가, 공가 등 휴가를 실시하고, 2020. 1월부터 2023. 3월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38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공가를 허가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 공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연차 유

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도서관은 소속 직원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경우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 허가를 받은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연가보상비 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립도서관(정책운영팀, 정보서비스팀)은 2020. 12월부터 2022. 12월 까지 [표] “공가 부당 사용 현황”과 같이 ○○○ 등 총 5명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 신청을 한 후 공가 허가일에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용무 등을 처리하였는데도 공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공가를 부적정하게 허가하였고, ○○○ 등 3명에게 연가보상비 300,64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공가 부당 사용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공가일	실제검진일	연가보상비 회수대상	회수 사유
계			5명			300,640	
1	도립도서관	○○○	○○○	2021.12.20.	2021.11.26.	66,560	공가일 건강검진 미 실시
2	"	○○○	○○○	2021.11.08.	2021.11.11.	116,880	"
3	"	○○○	○○○	2020.12.01.	2020.12.12.	-	"
4	"	○○○	○○○	2022.12.29.	2022.12.28.	117,200	"
5	"	○○○	○○○	2021.05.06.	2021.04.03.	-	"

자료 : 도립도서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립도서관장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립도서관장은

- ① 공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3명에게 300,640원을 회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소속 직원들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도록 복무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행정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립도서관(정책운영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립도서관(이하 “도립도서관”이라 한다)은 2020. 1월부터 2023. 3월 까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 등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도서관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전라남도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비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립도서관(정책운영팀)은 2020. 1월부터 2023. 3월까지 [표] “행정재산 사용료 분납 및 공제비용 미징수 현황”과 같이 ○○○ 등 2명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면서 ○○·○○은 매년 4회, ○○는 매년 2회 사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면서 보증금을 예치받거나 전라남도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지 않아 업무를 방치하였다.

또한 ○○·○○, 등을 신규로 사용허가하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비용 219천원을 징수¹⁾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행정재산 사용료 분납 및 공제비용 미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재산의 종류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료		공제비용 미징수	
			금액	납부방법	기간	금액
○○·○○ (0층)	○○○	2020.04.01.~ 2023.03.31.	1년차 35,000 2년차 35,578 3년차 35,901	매년 4회 분할 납부	2023.04.01.~ 2023.12.31.	174
○○○○○○ (○○)	○○○	2020.03.09.~ 2022.10.24.	1년차 6,939 2년차 7,052	매년 2회 분할 납부	-	-
	○○○	2022.12.16.~ 2025.12.15.	1년차 7,706	일시 납부	2022.12.16.~ 2023.12.31.	45

자료 : 도립도서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립도서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립도서관장은

① ○○·○○ 등 행정재산의 사용자에게 2023년 공유재산 공제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1) 이번 감사기간(2023.4.28.~5.4.)동안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1만원의 공제비용을 미징수함

② 앞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분할하여 납부받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전라남도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시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발주 수의계약 및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립도서관(정책운영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립도서관(이하 “도립도서관”이라 한다)은 2020. 1월부터 2023. 3월까지 공사 및 용역·물품 135건, 1,369,293천원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고, 이행완료 시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분할발주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5호 바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구매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 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장애인기업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도서관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서관(정책운영팀)은 2021. 10월부터 2022. 12월까지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별표 1]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단일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체 사업내용이 단일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 ○○○○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등 15건으로 분할 발주하여 부적정하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¹⁾하였다.

3. 공사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 이번 감사기간(2023.4.28.~5.4) 동안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율 90%를 적용하여 예산 낭비는 없음을 확인함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도서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사조사를 작성하도록 하며, 검사조사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도서관(정책운영팀)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준공검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표 2] “검사·검수 부적정 현황”과 같이 ‘○○○○○ ○○ ○○ ○○ 공사’ 등 48건, 1,823,473천원의 계약에 대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여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립도서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립도서관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일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단일계약으로 체결하고,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계약 및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박물관(학예연구실)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하 “농업박물관”이라 한다)은 2020. 2월부터 2023. 4월까지 농업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 위촉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박물관은 ○○○○○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업박물관(학예연구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표] “○○○○○ 위원

위촉 부적정 현황”과 같이 ○○○ 등 6명을 2회 연임하도록 위촉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 위원 위촉 부적정 현황

연번	2019.02.11. 위촉 (2019.02.11.~2021.02.21.)	2021.01.22. 위촉 (2021.02.22.~2023.02.12.)	2023.02.13. 위촉 (2023.02.13.~2025.02.12.)	부적정 사유
1	○○○	○○○	○○○	2회 위촉
2	○○○	○○○	○○○	2회 위촉
3	○○○	○○○	○○○	2회 위촉
4	○○○	○○○	○○○	2회 위촉
5	○○○	○○○	○○○	2회 위촉
6	○○○	○○○	○○○	2회 위촉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자료 : 농업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10항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¹⁾7. 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은 2시간 이내 100천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박물관은 위원회에 2시간 이내로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는 1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업박물관(학예연구실)은 2020. 5월부터 2022. 5월까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는 각 100천원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과 ○○○ 등 26명에게 각 200천원씩 지급하여 총 2,600천원의 참석수당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박물관장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1) (일반위원회) 2시간 이내 100천원, 2시간 초과시 50천원/(사이버위원회) 2시간 이내 50천원, 2시간 초과시 20천원

전라남도 통보

제 목 불법건축물 시설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관리팀, 학예연구실)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하 “농업박물관”이라 한다)은 2020. 2월부터 2023. 4월까지 농업박물관 내 전시관, 체험관, 편의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박물관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수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건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업박물관(관리팀, 학예연구실)은 [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위반 건축물 현황”과 같이 ‘창고, 축사’ 등 5개소를 건축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신청 및 허가를 받은 후 건축하여야 하는데도 준수 허가없이 불법으로 건축하면서 76,710천원을 집행하였고, 2023. 5. 4.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위반건축물 현황

(단위 : m², 원)

연번	건축법 위반 현황					시설일	적발일	사업비
	위치명	위 치	위반내용	용 도	위반면적			
계	5개소				104.45			76,710,900
1	농업박물관	영암군 삼호읍 ○○리 000번지	건축법 제11조 (무허가 건축물)	창고	26.45	1993년	2023. 05.04.	2,400,000
2	농업테마공원	영암군 삼호읍 ○○리 0000번지	"	축사 (염소)	18.0	2015. 06.28.	2023. 05.04.	16,442,357
3	"	영암군 삼호읍 ○○리 0000번지	"	축사 (양)	18.0			16,442,357
4	"	영암군 삼호읍 ○○리 0000번지	"	축사 (토끼)	32.0			10,726,186
5	"	영암군 삼호읍 ○○리 0-0번지	"	화장실	10.0	2021. 04.30.	2023. 05.04.	30,700,000

자료 : 농업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박물관장은 불법건축물 부지의 용도,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화 또는 철거방안을 검토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대체휴무 운영 및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관리팀, 학예연구실)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하 “농업박물관”이라 한다)은 2020. 2월부터 2023. 4월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2. 대체휴무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제1항 및 제2항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제4장 제3호에 따르면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박물관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자 할 때 공문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휴무 운영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업박물관(관리팀, 학예연구실)은 2021. 10월부터 2023. 4월까지 총 14회 토요일 주말농부장터를 운영하면서 토요일 근무에 따른 53건의 대체휴무를 [별표] “대체휴무 부적정 실시 명세”와 같이 공문 및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부서장의 승인없이 실시하는 등 대체휴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3. 공용차량 배차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복무규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차량배차 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제23조에 따르면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박물관은 출장 시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배차 신청을 하고, 배차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을 운행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업박물관(관리팀, 학예연구실) 2022. 5월부터 2022. 12월까지 [표 2] “배차 미신청한 출장공무원 공용차량 운행 현황”과 같이 4명의 출장공무원이 차량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공용차량 배차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였다.

[표 2] 배차 미신청한 출장공무원 공용차량 운행 현황

연번	출장일자	출장지	출장목적	공용차량 배차여부	공용차량 사용여부	공용차량 운전자
합계			4건			4명
1	2022.05.23.	보성	녹차묘목 관리 등 업무협의	부	여	○○○○○○○ ○○○
2	2022.07.14.	영암	관광지 쓰레기 수거	부	여	○○○○○○○○○○○ ○○○
3	2022.11.02.	영암	농업테마공원 환경정비	부	여	○○○○○○○○○○○ ○○○
4	2022.12.01.	영암	상토 팔레트 반납	부	여	○○○○○○○ ○○○

자료 : 농업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박물관장은

- ① 부서장의 승인 없이 실시한 53건의 대체휴무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서장에게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시정)
- ③ 앞으로 대체휴무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공용차량 사용 시 차량 배차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복무 및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농업박물관(관리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하 “농업박물관”이라 한다)은 2021. 3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26,977천원의 농업박물관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박물관은 단일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업박물관(관리팀)은 [표] “분할 계약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 ○○○○○○ ○○공사를 2021. 2월과 같은 해 5월에 ○○○○ ○ ○○○○○○○○○ 공사와 ○○○○○ ○○○ ○○○○○○ ○○공사로 2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¹⁾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분할 계약 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일	세부사업명	공사명	계약상대자	예산액	계약금액
합계		2건		30,744	26,977
2021.02.26.	박물관시설유지보수	○○○○○ ○○○○○○ ○○공사	(주)○○○○	21,912	19,227
2021.05.06.	박물관시설유지보수	○○○○○ ○○○ ○○○○○○ ○○공사	(주)○○○○	8,832	7,750

자료 : 농업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농업박물관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이번 감사기간(2023.4.28.~5.4.) 동안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율 87.745%를 적용하여 예산 낭비는 없음을 확인함